우선주식 인수계약

본 우선주식인수계약(이하 "<u>본 계약</u>")은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2024년 9월 4일(이하 "체결일")자로 체결되었다.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34층(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 본 점을 둔 전북에너지 주식회사(이하 "발행회사")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아이에프씨동 22층, 24-27층에 본점을 둔 메리츠전북에너지 주식회사 (이하 "인수인")

이하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 그 일방을 지칭할 경우에는 "<u>당사자</u>"라 하고, 총칭하는 경우에는 "<u>당사자들</u>"이라고 한다. 또한, "<u>상대방 당사자</u>"라 함은, 발행회사에 대하여는 인수인을, 인수인에 대하여는 발행회사를 의미하다.

전 문

발행회사는 2024년 6월 17일 전북집단에너지 주식회사(이하 "<u>대상회사</u>")의 주주인 하나파워패키지 유한회사(이하 "<u>하나파워패키지</u>")로부터 대상회사 발행 보통주식 462,703주(대상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에 해당)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u>본건</u>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발행회사의 투자자들인 주식회사 이원, 한국플랜트서비스 주식회사, 인수인 및 발행회사는 2024년 9월 4일 발행회사 발행주식 등의 소유 및 처분, 발행회사 및 대상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투자자간계약(이하 "<u>투자자간계약</u>")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본 계약을 통하여 발행회사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액면금액 5,000원의제1종 우선주식 1,920주(이하 "<u>제1종 우선주식</u>"), 액면금액 5,000원의 제2종 우선주식 3,369주(이하 "<u>제2종 우선주식</u>",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을 총칭하여 "<u>대상주식</u>")를 발행하고, 인수인은 대상주식을 인수하고자 한다(이하 "<u>본건 거래</u>").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제1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본 계약의 각 조항에서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



투자자간계약에 정의된 바와 같다.

제2조 대상주식의 발행 및 인수

- 2.1 <u>거래구조.</u>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는 대상주식을 인수인에게 발행하고, 인수인은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대상주식을 인수한다.
- 2.2 <u>발행 조건.</u> 본건 거래의 인수주식의 종류, 주당 발행(인수)가액, 인수주식수 및 인수가액 총액(이하 "신주인수대금")은 다음과 같다.

인수주식의 종류	인수주식수	주당 발행(인수)가액	인수가액 총액
제1종 우선주식	1,920주	1,000,000원	1,920,000,000원
제2종 우선주식	3,369주	1,000,000원	3,369,000,000원

- 2.3 제1종 우선주식의 내용. 제1종 우선주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u>의결권.</u>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 (2)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i) 제1종 우선주식은 비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으로 일(1)주당 발행가 액 기준 연 일십퍼센트(10%)의 배당을 비누적적으로 보통주식에 앞서 우선 배당 한다. 명확히 하면, 제1종 우선주식은 제2종 우선주식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고,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이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당을 할 수 없다.
 - (ii)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이 이루어진 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한다. 이때, 보통주식의 주당 배당액이 제1종 우선주식의 주당 우선배당액을 초과할 경우, 보통주식, 제1종 우선주식, 제2종 우선주식의 주당 배당액이 동일한 주당 배당액이 되도록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2종 우선주식과 함께 참가하 여 배당을 받는다.
 - (iii)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iv)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제1종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제1종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일(1)개월 이내에 제1종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i) 발행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내부수익률을 일십퍼센트(10%)로 만드는 금액(단, 내부수익률 계산시 기배당 혹은 기지급금액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 수령 시점에 미리 분배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현금유입으로 계산)을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분배하고, 제2종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순위로 분배한다.
- (ii) (i)호에 따라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해 우선 분배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를 한다. 그러한 분배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이 제1종 우선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1종 우선주식은 보통주식, 제2종 우선주식의 주당 분배액이 동일한 주당 분배금액이 되도록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2종 우선주식과 함께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 2.4 <u>제2종 우선주식의 내용.</u> 제2종 우선주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의결권. 제2종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 (2)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i) 제2종 우선주식은 비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으로 일(1)주당 발행가 액 기준 연 일십퍼센트(10%)의 배당을 비누적적으로 보통주식에 앞서 우선 배당 한다. 명확히 하면, 제2종 우선주식은 제1종 우선주식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고,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종 우선주식 및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이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당을 할 수 없다.
 - (ii) 제2종 우선주식 및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이 이루어진 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이때, 보통주식의 주당 배당액이 제2종



우선주식의 주당 우선배당액을 초과할 경우 보통주식, 제1종 우선주식, 제2종 우선주식의 주당 배당액이 동일한 주당 배당액이 되도록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1종 우선주식과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iii)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 (iv)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제2종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제2종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 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일(1)개월 이내에 제2종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3)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i) 발행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내부수익률을 일십퍼센트(10%)로 만드는 금액(단, 내부수익률 계산시 기배당 혹은 기지급금액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 수령 시점에 미리 분배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현금유입으로 계산)을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분배하고, 제1종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순위로 분배한다.
- (ii) (i)호에 따라 제2종 우선주식 및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해 우선 분배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를 한다. 그러한 분배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이 제2종 우선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2종 우선주식은 보통주식, 제1종 우선주식의 주당 분배액이 동일한 주당 분배금액이 되도록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1종 우선주식과 함께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제3조 거래종결

3.1 <u>거래종결의 일시 및 장소.</u> 본건 거래의 종결(이하 "<u>거래종결</u>")은 제4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권한 있는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포기된 경우를 포함함)되는 것을 전제로,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의 일(1) 영업일 전



또는 그 전의 날로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이하 "<u>거래종결일</u>")에 발행회사의 본점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장소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 3.2 <u>거래종결시 인수인의 이행사항.</u> 인수인은 거래종결일에 발행회사가 통지한 주금납입 계좌(발행회사는 거래종결 삼(3) 영업일 전까지 계좌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주금납입 계좌가 개설된 은행을 "<u>납입은행</u>"이라 함)에 신주인수대금을 즉시 인출 가능한 원화로 송금한다.
- 3.3 <u>거래종결시 발행회사의 이행사항.</u>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제3.2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즉시, 납입은행이 발행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사본을 인수인에 게 교부한다.
- 3.4 <u>거래종결일 익일의 발행회사의 이행사항.</u> 발행회사는 거래종결일 익일인 발행일에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한다.
 - (1) 대상주식을 표창하는 주권(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주권미발행확인 서)을 발행하여 인수인에게 교부한다.
 - (2) 주주명부에 인수인을 대상주식에 대한 주주로 등재한 후 그러한 등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주명부 원본대조필 사본을 인수인에게 교부 한다.
 - (3) 대상주식 발행을 반영하여 자본금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다.

제4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 4.1 <u>발행회사의 거래종결 의무의 선행조건.</u> 발행회사가 본건 거래를 종결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발행회사에 의해 포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1) 체결일과 거래종결일 현재(단, 특정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특정일 현재) 제6조에 규정된 인수인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고 진실될 것.
 - (2) 인수인이 거래종결일까지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확약사항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 (3) 본건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 (4) 성질상 거래종결일 당일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건 주식 매매계약의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었고,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것.
- (5) 투자자간계약이 체결되어 유효하게 존속할 것.
- 4.2 <u>인수인의 거래종결 의무의 선행조건.</u> 인수인이 본건 거래를 종결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인수인에 의해 포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다.
 - (1) 체결일과 거래종결일 현재(단, 특정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특정일 현재) 제5조에 규정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고 진실될 것.
 - (2) 발행회사가 거래종결일까지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확약사항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 (3) 본건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 (4) 성질상 거래종결일 당일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건 주식 매매계약의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었고, 본건 주식매매계약 의 거래종결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것.
 - (5) 투자자간계약이 체결되어 유효하게 존속할 것.

제5조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발행회사는 체결일과 거래종결일 현재(특정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특정일 현재) 다음 각 항에 규정된 사항이 모두 정확하고 진실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5.1 법인 및 권한.

- (1) 발행회사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며,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 및 자격을 가지고 있다.
- (2)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발행회사의 모든 필요한 내부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되었다



- 5.2 <u>집행 가능성.</u> 본 계약은 발행회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계약의 조건들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구성한다.
- 5.3 <u>동의; 위반사항의 부존재.</u> 발행회사에 의한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i) 발행회사의 정관에 위반되거나, (ii) 발행회사에게 적용되는 법령 또는 정부승인에 위반되거나, (iii)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중요한 계약 또는 발행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중요한 의무와 관련하여 그 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을 구성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상대방 계약당사자,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통지, 결정 또는 결의나 일정 기간의 경과시 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을 구성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를 포함함).
- 5.4 <u>규제요건</u>.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회사가 획득 하거나 충족되어야 하는 동의, 승인, 허가, 수권 등의 요건은 모두 획득되고 충족 되었거나, 획득 또는 충족될 수 있다.

5.5 자본구성 등.

- (1) 체결일 현재 발행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주이다.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었으며 추가 납입의무가 없다. 발행회사는, 투자자간계약에 따라 추가 발행될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7,187주와 대상주식 등 투자자간계약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또는 기타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있거나 달리 발행회사의 신주발행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이나 기타권리를 발행 또는 부여하거나 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 (2) 투자자간계약 및 투자자간계약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회사는 2024. 5. 14. 설립된 이래 여하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바 없고, 우발채무나 부외부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6조 인수인의 진술 및 보장

인수인은 체결일과 거래종결일 현재(특정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특정일 현재) 다음 각 항에 규정된 사항이 모두 정확하고 진실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6.1 법인 및 권한.



- (1) 인수인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며,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 및 자격을 가지 고 있다.
- (2) 인수인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은 인수인의 모든 필요한 내부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되었다.
- 6.2 <u>집행가능성.</u> 본 계약은 인수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인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의 조건들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구성한다.
- 6.3 <u>동의; 위반사항의 부존재</u>. 인수인에 의한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i) 인수인의 정관에 위반되거나, (ii) 인수인에게 적용되는 법령 또는 정부승인에 위반되거나, (iii) 인수인이 당사자인 중요한 계약 또는 인수인이 부담하고 있는 중요한 의무와 관련하여 그 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을 구성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상대방 계약당사자,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통지, 결정 또는 결의나 일정 기간의 경과시 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을 구성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를 포함함).
- 6.4 <u>규제요건.</u>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인수인이 획득하 거나 충족되어야 하는 동의, 승인, 허가, 수권 등의 요건은 모두 획득되고 충족되 었거나, 획득 또는 충족될 수 있다.

제7조 확약사항

- 7.1 계약의 이행.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상대방 당사자의 거래종결 의무에 대한 선행조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거래종결일 전에 (i) 본 계약에 규정된 어느 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이 부정확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ii)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거나 충족시켜야 하는 중요한 확약, 조건 또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와 같은 통지는 그러한 사유의 치유, 진술 및 보장 또는 확약 등 위반의 시정 또는 조건의 충족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7.2 <u>신주인수권.</u> 인수인은 본 계약 및 투자자간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인수인이 신주인



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우선주식으로 하고, 유 상증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모든 손해(지연이자, 소송비용,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배상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면, 어느 당사자의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본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수수료, 계약금 몰취를 포함하여 본건 주식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하나파워패키지에 대한 손해배상,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에 대한 구상의무 등으로 인해 다른 당사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포함함)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해제

- 9.1 <u>해제 사유</u>. 본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체결 후 본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또한, 본 계약 의 일방 당사자(이하 "<u>해제당사자</u>")는 거래종결 전에 다음 각 항의 1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해제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 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상대방 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사항 또는 의무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러한 허위, 부정확함이나 위반에 대해 해제당사자 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고도 삼십(30)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완전히 시정 하지 못한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가 필요하지 아니함).
 - (2)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채권단에 의한 워크아웃 또는 이와 유사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또는 발행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 9.2 <u>해제의 효과.</u>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본 계약 및 그



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 의무를 면한다. 단, 해제 이전에 발생한 본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해제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며, 제8조 내지 제10조 기타 그 성격 상 본 계약의 해제 후에도 적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건과 규정은 계속 유 효하게 존속한다.

9.3 <u>거래종결 후 해제 제한.</u> 본건 거래가 종결된 후, 각 당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제10조 일반조항

- 10.1 <u>비용 부담.</u> 투자자간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 및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각종 조세부담을 포함)은 해당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 10.2 계약 대체. 당사자들은 2024년 6월 17일 발행회사와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우선주식인수계약("기존 우선주식인수계약")과 관련하여, 인수인이메리츠증권 주식회사로부터 기존 우선주식인수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이전 받음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체결로 기존 우선주식인수계약을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이해하고 확인한다.
- 10.3 기타. 본 계약에 대하여 투자자간계약 제20조의 기타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페이지에 기명날인함]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전북에너지 주식회사

사내이사 김 재호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메리츠전북에너지 주식회사

사내이사 김 이 현

